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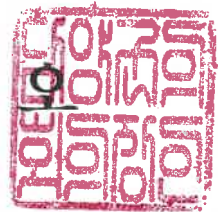
담양군의회 규정 제1호

발령문

담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1. 8. 27.)에서
의결된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한다.

2022년 6월 22일

담양군의회 의장 김 정



붙임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 1부.

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

1. 제안이유

- 담양군의회 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폐회중에 정기 및 임시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간담회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(안 제3조)
 - 정기간담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임시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
-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고 의장 부재시는 부의장이 주재, 의장·부의장 모두 부재시 참석의원중 최다선 의원이 주재(안 제4조)
- 군수, 부군수 및 국장, 과장, 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(안 제5조)
- 간담회 토의안건(안 제6조)
 1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2.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
 3. 의원 상호간의 의견·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
 4. 의회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
 5.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
 6.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
 7.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정기간담회 안건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까지, 임시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(안 제7조)
 -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음(안 제8조)
 -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(안 제9조)

3. 규정 : 붙임

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

「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붙임 : 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 1부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담양군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담양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와 관련된 각종 안건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(이하 "간담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구성) 간담회는 담양군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간담회) 간담회는 폐회중에 개최하며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 한다.

- ①정기간담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.
- ②회의 안건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임시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회의) ①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.

- ②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,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시에는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 의원이 주재한다.

제5조(배석 및 발언자) ①간담회 관련 사항은 의정담당이 설명한다.

- ②군수·부군수 및 국장·과장·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③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의정담당·의사담당이 배석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타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
④출석 발언자는 회의장소에 사전 입장 할 수 없으며 간담회의 순서에 따라 발언순서가 되었을 때 입장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의안건)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
2.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
3. 의원 상호간의 의견·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
4. 의회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
5.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
6.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
7.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7조(안건 제출) 간담회 안건 중 정기간담회 안건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까지, 임시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충설명)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견결정) 간담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10조(간사)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.

②간사는 간담회의 결과를 의정종합일지에 기록 비치한다.

제11조(타 시·군의회의와의 간담회 개최)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교환을 위한 타 시·군의회의와의 간담회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

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